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.

발 의 자 : 박 정 · 김정호 · 허종식
김남근 · 홍기원 · 강득구
박해철 · 안호영 · 송재봉
문진석 · 이춘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 근거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·조사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에 대한 정보 수집, 관련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제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또한, 전문기관인 ‘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’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, 공공기관 및 민간

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의3, 제46조제1항제9호 신설 및 제48조).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3(위해방지 등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·재산 또는 환경상 위해의 감시·예방·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·조사
2.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통계 작성·관리
3.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해 예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등

제48조의 제목 중 “단체”를 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인”

을 “기관, 법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술개발 및 홍보”를 “기술개발, 홍보 및 위해방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런 학계 및 전문기관 간에 생
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
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
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
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
행할 수 있다.

-----기술개
발, 홍보 및 위해방지-----

-----.